

審 查 報 告 書

運 營 委 員 會
2000. 6. 8

1. 審 查 經 過

- 가. 發議口字：2000. 5. 23
- 나. 發 議 者：賈大鉉 議員 外 10人
- 다. 回附日字：2000. 5. 25
- 라. 上程日字：2000. 6. 8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：賈 大 鉉 議 員)

가. 提 案 理 由

-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(2000. 5. 4)에서 집행기관의 기구중 1국 1과를 증설하는 내용의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운영코자 함.

나. 主 要 骨 子

- 상임위원회의 총무위원회 소관중 “지적과”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하고,
- 산업건설위원회소관중 “도시건축과”를 “도시과·건축과”로 하고, “지적과”를 신설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
-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이에 부합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.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52 호
의 결	2000. . .
년 월 일	(제 회)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가대현 의원외 10 인
발의년월일	2000. 5 . 23 .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5 . 23 .

발 의 자 : 가대현의원외10인

1. 개정이유

1국1과를 증설하는 내용의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(2000.5.4)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 운영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상임위원회의 총무위원회소관중 “지적과”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함(안 제3조제2항제2호).
- 나. 산업건설위원회소관중 “도시건축과”를 “도시과·건축과”로 하고 “지적과”를 신설함(안 제3조제2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○입법예고 : 해당없음

○관련법규

-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, 제5조, 제6조

-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“지역경제과·지적과”를 “지역경제과”로 하고, 동항제3호중 “도시건축과·교통행정과”를 “도시과·건축과·교통행정과·지적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①(생략)</p> <p>②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(생략)</p> <p>2.총무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실·문화공보담당관실·자치행정과·세무과·회계과·종합민원실·사회여성복지과·민방위재난관리과·지역경제과·지적과·보건소·문화회관·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산업건설위원회 농림과·축산해양과·환경보호과·건설과·도시건축과·교통행정과·농업기술센터·상하수도사업소·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①(현행과같음)</p> <p>②-----.</p> <p>1.(현행과같음)</p> <p>2.----- ----- ----- ----- 지역경제과 ----- -----</p> <p>3.----- ----- -----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----- ----- -----</p>